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상욱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430

발의연월일: 2025. 3. 28.

발 의 자:김상욱・김선교・조지연

박준태 • 박덕흠 • 김기현

최형두 · 김예지 · 이종배

서천호 · 성일종 의원

(119]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한국관광공사가 아닌 자가 한국관광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이는 한국조폐공사, 한국도로공사 등 유사한 다른 공공기관의 유사명칭 사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금액이 500만원인 경우와 비교해 볼 때 낮은 수준이므로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음.

이에 한국관광공사가 아닌 자가 한국관광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 칭을 사용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 으로 상향함으로써 유사한 다른 공공기관과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임 (안 제19조제1항).

법률 제 호

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국관광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9조제1항 중 "300만원"을 "500만원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9조(과태료) ① 제6조를 위반	제19조(과태료) ①
하여 한국관광공사 또는 이와	
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	
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	- <u>500만원</u>
부과한다.	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